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34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06가합78577 보험계약해지무효  
원 고 정○○○○○ (○○○○○○-○○○○○○○○)  
광주 ○○○○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홍수, 김동성, 김용주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조동식  
변 론 종 결 2007. 4. 27.  
판 결 선 고 2007. 5.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은 달 22. 송○○○○○○○○○○에게 5,314,19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인 조○○○○○○○○이 원고 또는 송○○○○○○○○에게 고지의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표의 질문사항 및 병력사항도 조○○○○○○○○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고지의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송○○○○○○○○이 2002. 6. 5.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심방세동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고지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고가 설명을 게을리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고지의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대로 심방세동 등 송○○○○○○○○의 기왕 병력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3) 송○○○○○○○○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았고, 심방세동

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16대 특정질병 분류표 중 기타 심장질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 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3.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의 본안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의 가.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할 것인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라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이상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의 확인의 소는 그 소를 제기할 만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를 다툼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송[ ]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고,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뿐 아니라 사망의 경우까지 보험사고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원고가 송[ ]의 법

정상속인으로서 그 수익자 중의 1인이 됨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룰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 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뒤에 첨부되어 있는 16대 질병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을 원고와 송○○○○에게 확인하면서 청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측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당뇨병,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청약서 제4항)에 대하

여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청약서 제10항)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하였으며, 원고와 송○○○○○○은 각각 계약자와 피보험자 란에 서명하였다.

다) 그런데, 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04. 11. 16.부터 2004. 12. 28.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 급성경막하출혈, 뇌경막하수종,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고 광주 ○○○○○○○구 산정동 하남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1. 2. 5.부터 2004. 2. 23.까지 만성 위축성,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및 장관내 이형성증 요추부 염좌, 요추협착(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4일의 통원치료와 211일의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2. 6. 5. 하남 성심병원에서 심방세동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 2) 판단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당시 작성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과연 원고 또는 송○○○○○○이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송○○○○○○이 심방세동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기타 질병으로 장기간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측은 조○○○○○○의 질문에 송○○○○○○이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여 청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우선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진단받은 병명인 심방세동, 급성 미란성 염증, 간병증(간질환) 등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사지동맥 죽상경화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만, 상법 제651조(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와 상법 제655조(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소급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지의 장래적 효력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급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법 제651조는 해지권의 발생과 더불어 제척기간의 도과 및 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라는 사유만을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나 제한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발생을 보험사고 발생과는 무관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보아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인 경우에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

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하 \_\_\_\_\_

                         판사            이종기 \_\_\_\_\_

                         판사            백숙중 \_\_\_\_\_